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37

발의연월일: 2024. 9. 26.

발 의 자:김원이ㆍ이해식ㆍ김남근

서영석 · 김선민 · 박지혜

전진숙 • 민병덕 • 박홍근

김교흥 · 김동아 · 김태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대상 기관으로 국가, 지 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(산업통상 자원부 고시)은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 중 '국가'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,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
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,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비해 에너지이용 효율 화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'국회' 등 헌법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,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함으로써,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조치"를 "조치(제1호가목의 자가 추진하는 조치는 제외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국가"를 "국가기관"으로, "대통령령"을 "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가기관

- 가.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나.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) 및 그 소속 기관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한 조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	제8조(국가・지방자치단체 등의
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) ①	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) ①
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	
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	
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	
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	
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	
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	조치(제1호가목의 자가 추진하
를 거쳐야 한다.	는 조치는 제외한다)
<u>1. 국가</u>	<u>1. 국가기관</u>
	<u>가.</u>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
	<u>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</u>
	나.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
	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
	기관을 포함한다) 및 그
	소속 기관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<u>는 기관</u>
② 제1항에 따라 <u>국가</u> ·지방자	② <u>국가기관</u>
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	
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	

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<u>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</u> <u>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</u> 통령령-----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각 호의 자가 에너지의 효 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한 조치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공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